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의안번호	39
------	----

2022년 12월 5일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1. 최상진 의원
- 나. 회부일자: 2022. 11. 14.
- 다. 상정일자: 2022. 12. 5. 제298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최상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도시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해 규정함 (안 제4조)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추진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 개인형 이동장치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차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참고사항

- 협의: 소관부서(도시교통과) 협의 완료
- 예산조치: 예산 조치 필요
- 관계법규
 -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11조, 제13조의 2, 제50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 령)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 2022년 11월 11일 최상진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9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용안전계획,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안전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사회·경제·기술의 변화가 빠르게 발생하였고, 통행의 변화와 교통체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정책으로 서울의 통행량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구민 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고예방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은 총 14개의 조문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2조**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 용어 정의를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 ▶ **안 제3조(책무)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토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법에 따른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 ▶ **안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제1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 증가와 관련 사고 증가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과 재원조달, 관련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에서는 제1항의 이용안전계획 수립 시 구민 및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 ▶ **안 제5조(사업추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 **안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범지구를 조성하거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 ▶ **안 제7조(가이드라인의 마련)**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 **안 제8조(안전교육)제1항**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 **안 제9조(주차시설 설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많은 지역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으며,
- ▶ **안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 금지를 명시하였으며,
- ▶ **안 제11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추진 시에, 송파구민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 **안 제12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여 사업자로 하여금 불법 주차(방치)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안전 운행을 위한 안내문 부착,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 ▶ **안 제13조(협력체계 구축)**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 강화를 위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장구 미착용 등 의무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며, 면허 보유여부, 안전장구 착용 등 전반적인 내용이 경찰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은 감소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교통수단 이용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보도혼잡, 보행권 침해, 안전사고 증가와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안전한 이용환경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작성·제출된 안전임을 검토보고 드림.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최옥주 위원

- 안 제1조 본문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는지?
- 안 제2조제1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지 않은지?

- 안 제3조제2항에 이용자의 안전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조례상에 안전의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 안 제10조제2항에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을 적시하는 것이 어떤지?
- 안 제11조의 경우,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매년 1회 이상 등)을 명시하는 방안 건의

【답변】 최상진 의원

- 안 제1조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 다른 조항의 경우, 제정안의 취지와 맞지 않게 수정될 수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려움.

【질의】 김광철 위원

-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 또는 멜로디 사운드를 적용토록 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예산 설명 요구

【답변】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 사운드 시스템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어 향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대여사업자와 협의해보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으로,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교육’에 480만원, ‘그린 모빌리티 주차마당 설치’에 2천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음.

【질의】 김샤인 위원

- 제9조 주차시설 설치 조항이 들어간 근거는? 주차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대여사업자의 의무가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은지?

【답변】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우리 구민이고,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됨.

【질의】 신영재 위원

-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는 구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은 이용자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는 점을 지적.

【답변】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 도로교통법에서 범칙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는 동일한 내용을 넣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질의】 이혜숙 위원

-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설명 요구

【답변】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아직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강제조항을 두기 어려운 상황임.

【답변】 최상진 의원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하는 구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 환경 구축 및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

5. 심사결과: 보류

(※ 위원회 간담회 결과, 미진한 부분을 다듬어 다음 기회에 상정하기로 함)